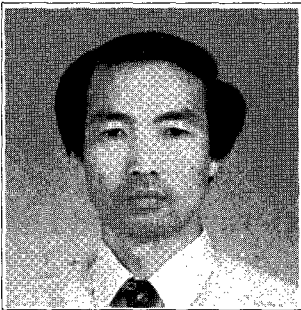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와 IAEA 전면보고제도

- 핵물질·핵관련물자를 중심으로 -

이 경 우

과학기술처 원자력검사와 사무관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전략기술수출공고」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선

진국 및 핵무기 보유국들은 미사일·핵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공산권수출통제기구(COCOM)를 비롯, 원자력공급그룹(NSG) 및 쟁거위원회(ZC)·미사일수출통제기구(MTCR)·생화학무기수출통제기구(AG) 등 비공식 국제기구를 설립하였다.

이 중 국제 원자력 관련 수출 통제 제도(COCOM, NSG, ZC)는 핵확산 위험에 대한 대응 과정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물자 및 기술의 교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핵확산의 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확산기구의 출범 및 성격

1. 배 경

원자력 수출 통제 제도는 어느 한 국가만이 독자적 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성격이므로 다국간 협력 체제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관련 기술 수준의 발전과 함께 통제 대상 품목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원자력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

크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었던 것이 밝혀짐에 따라, 기존의 수출입 통제 제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확산 체제 회원국들은 한국의 공업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고 있으므로 통제 대상 품목의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간주하여 통제 체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아시아 각국의 수출 통제 체제 정비와 이에 따른 공동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평화와 원자

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92. 12)하여 전략 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 근거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공고(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85호, 95. 10. 1)를 개정·시행하였다.

기술개발촉진법에서는 전략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였으며, 전략기술수출공고(과학기술처 고시 제1995-10호, 95. 10. 1)를 개정·시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및 전략기술수출공고에서는 통제 품목을 정하고 성능과 규격을 규정하여 핵비확산을 위한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옛 소련 등 공산 국가에 대하여 전략 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공산권수출통제기구(COCOM)는 옛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국제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94년 4월에 해체되었고, 옛 소련·헝가리 등 공산권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통제 대상 국가도 공산 국가가 아닌 핵무기 개발 우려국이나 분쟁 우려국 또는 테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통제 체제(Wassenaar 체제)가 금년중에 설립될 예정이다.

한국은 동체제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원자력공급그룹(NSG) 및 쟁거위원회(ZC)에는 95년

10월에 가입하였다.

이들 기구들의 공통점은 비공식적인 국제 기구이며 회원국들의 정책 선언이며 정치적 약속이다.

기구의 지침과 절차는 회원국간의 협의·조정하고, 법보다도 신사 협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

또한 회원국 스스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국의 재량에 따라 국내법으로써 통제를 이행하고 있다.

비확산 국제 기구는 앞에서 말한 여러 국제 기구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COCOM·NSG 및 ZC에 관하여 알아본다.

2. 신 COCOM 체제 출범

COCOM(Coordination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동구권에 공산 정권이 출현하고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는 등 공산주의가 확산되어 가던 시점에, 미국을 중심으로 공산 국가에 대한 전략 물자와 고도 기술의 수출을 금지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COCOM은 그 동안 17개 회원국 상호간의 안전 보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상호 협조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전후 장기간 동안 대 공산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는 COCOM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94년 3월말 COCOM은 역사적인 중지부를 찍었으며, 공산 국가

가 가입하고 핵무기 개발국이나 분쟁 우려국 또는 테러 국가를 통제 대상으로 하는 신체제(Wassenaar 체제)가 설립될 예정이다.

신체제는 95년 12월 18일 네덜란드 헤이그 바세나르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의에서 신체제 설립에 합의하였고, 신체제 설립에 관한 최종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신체제 명칭은 「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일명 바세나르 체제)」이며, 창립 회원국 구성은 옛 COCOM 회원국 17개국과 러시아·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하여 28개국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전체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준비 위원회가 96년 1월에 구성되어 작업을 개시, 주로 행정적인 문제를 협의하였다.

사무국은 비엔나에 설치하고 창립 총회는 비엔나에서 열린다.

이때부터 신체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통제 분야는 주로 재래식 무기 및 이중 용도 사용 품목·기술이며, 수출시 회원국 간의 자발적인 정보 교환 및 상호 통보를 내용으로 추진중이다.

신규 회원국의 희망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불가리아·루마니아 등이며 95년 12월 회의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

원국들이 한국의 가입을 지지 발언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은 87년 한·미간 COCOM 수출 통제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국내 규정을 마련하고 수출입 통제를 이행하고 있다.

3. 원자력공급그룹

런던 클럽 설립에 대한 회의는 74년 11월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국제 정세에 기인하였다.

- ①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자로와 자국산 천연 우라늄을 이용한 인도의 74년 핵실험
- ② OPEC의 석유 가격 인상 조치로 인한 제3세계 국가들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 고조
- ③ 프랑스와 옛 서독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농축 및 재처리 시설 계약 체결 또는 협상 진행

미국과 캐나다는 NPT 3조만으로는 핵확산을 방지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인식 아래, 인도와 같은 또다른 국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자력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당시 NPT 회원국이 아니었던 프랑스를 NSG 회원국으로 참여시키고, 원자력의 수출입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수출 통제를 하자는 것이었다.

NSG는 78년에 민감한 원자력 품목을 수출할 때 부과할 조건에 합의하여 그 내용을 INFCIRC/254로 발표

〈표 1〉 원자력공급그룹(NSG) 연혁

78. 1(창립총회)	NPT 제3조 2항의 범위를 넘어선 수출 통제 지침에 합의
91. 3(1차 총회)	이중 사용 품목의 통제 원칙 합의, 신흥 원자력 공급국의 회원국 참여 노력
92. 3(2차 총회)	이중 사용 품목 통제 채택, Part I 품목 전면 안전 조치 선언
93. 3(3차 총회)	NSG 운영절차 채택, Part I 품목 전면 안전 조치 채택
94. 4(4차 총회)	Part I 및 Part II 통제 품목의 개정
95. 4(5차 총회)	Part I 품목과 관련된 모든 기술의 통제 Part II 통제 품목 개정

하여 설립하였다(표 1).

90~91년 걸프전 당시 발견된 이라크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에 서방 세계에서 들어온 많은 이중 사용 품목들이 사용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원자력 관련 이중 사용 품목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NSG Part II가 92년에 채택되었다.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에 따른 핵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NSG Part I의 수출 통제 지침은 다음(표 2)와 같다.

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유사한 조항도 있으며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 내용과 목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쟁거위원회

70년 3월 5일 NPT(Non Proliferation Treaty, 핵무기비확산조약)가 발효됨에 따라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교역의 틀이 마련되었다.

근거가 되는 조항은 NPT 제3조 2항이다.

〈표 2〉 NSG Part I 수출 통제 지침 및 목록 목적

〈원자력 수출을 위한 지침〉
1. 안전 조치와 수출 통제의 기본 원칙
2. 핵폭발 장치에의 사용 금지
3. 물리적 방호
4. 안전 조치
5. 안전 조치
6. 특정 기술 수출에 따른 안전 조치
7. 민감한 수출에 대한 특별 통제
8. 농축 시설·장비 및 기술의 수출 특별 통제
9. 핵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통제
10. 재수출에 대한 통제
11. 비확산 원칙
12. 물리적 안전
13. 효과적인 IAEA 안전 조치를 위한 지원
14. 민감한 공장 설계의 특성
〈부속서 A〉 지침에서 언급된 통제 목록
Part A : 물질 및 장비
1. 핵연료 물질 및 특수 핵분열성 물질
2. 장비 및 비핵물질
Part B : 지침 6에 대한 기술 수출 공통 기준
〈부속서 B〉 통제 품목 명시
1. 원자로 및 부속 장비
2. 원자로용 비핵물질
3. 조사회 핵연료 재처리 공장 및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4. 핵연료 요소 가공 공장
5.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공장 및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분석 도구는 제외)
6. 중수·중수소 및 중수소 화합물 생산 공장 및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7. 우라늄 변환 공장 및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부속서 C〉 물리적 방호 수준의 기준

71년에는 NPT 제3조 2항의 시행을 위해 원자력수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출 통계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를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ZC)라고 부른다.

71년부터 74년까지 비엔나에서 15개 국가가 참여하여 연차적으로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쟁거위원회가 NPT 제3조 2항의 수출 통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 핵분열성 물질을 가공·사용 또는 생산하도록 설계되거나 준비된 물질 또는 장비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둘째, 공정한 상거래에서 NPT 제3조 2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물질 또는 장비를 수출할 때 지켜야 할 조건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쟁거위원회의 지위는 비공식적인 것으로서 위원회의 결정은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74년에는 「원자력수출통제의 기본 규범」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최초의 실질적인 국제 원자력 수출 통제 체제가 마련되었고, 2개의 별도 각서로 수출 통제 조건 및 절차와 통제 품목을 규정하게 되었다.

각서 A, B는 각 회원국들간에 양해각서(Notes)를 교환함으로써 각국이 받아들였다.

〈표 3〉 쟁거위원회(ZC)의 연도별 통제 품목

1978년	지르코늄관, 중수/중수소/중수소 혼합물 생산 공장과 특별히 설계·준비된 장비, 우라늄 농축 관련 기술
1984년	가스 원심 분리에 의한 동위 원소 분리에 사용되는 특별히 설계·준비된 조립체/부품, 회전 부품/고정 부품, 보조 시스템, 장비, 부품
1985년	재처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용매 추출 장비, 화학 약품 취급 용기/저장조, 플루토늄 변환 장치, 절단 장치, 임계적으로 안전한 용해조
1990년	가스 확산법에 사용되는 확산벽 하우징, 압축기/송풍기, 회전축 봉인, 열교환기, 기타 특별히 설계·준비된 장비
1992년	중수 생산 공장에 사용되는 물-중수소 교환탑, 송풍기/압축기, 암모니아-수소 교환탑, 탑 내장 장치 및 단계 펌프, 적외선 흡수 분석기, 촉매 연소기
1993년	우라늄 농축 및 1차 냉각재 펌프에 대한 목록 수정

쟁거위원회의 결정은 국제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회원국의 일방적인 정책 선언이다.

쟁거위원회의 참여는 일방적인 형식이지만, 내용과 절차는 회원국간에 합의되고 조정된 것이므로 신사 협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

쟁거위원회의 지침은 74년 9월

〈표 4〉 쟁거위원회 통제 품목

핵 물질	핵연료 물질 특수핵 분열성 물질
장비 및 비핵물질	원자로 및 부속 장비 원자로용 비핵물질 조사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및 장비 핵연료 요소 가공 공장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공장 및 장비 중수·중수소·중수소 혼합물 공장 및 EDP 장비 우라늄 변환 공장 및 장비

〈표 5〉 비확산 통제 기구의 비교

구 분	옛 COCOM	NSG	ZC
설립연도	1950. 1	1978. 1	1974. 8
회원국	17개국	32개국	31개국
설립배경	공산권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 물자·기술의 수출 금지	NPT 제3조만으로 핵확산 방지에 불충분하다는 인식 확산	NPT 제3조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설립
통제 품목	· 일반 산업용 물자 · 방산 물자 · 핵관련 물자	· 원자력 전용 물자 · 핵물질· 특수 핵분열성 물질, 원자로 및 부속 장비, 핵연료 주기 시설 등 · 원자력 관련 일반 산업용 물자	· 원자력 전용 물자 · 핵물질, 특수 핵분열성 물질, 원자로 및 부속 장비, 핵연료 주기 시설 등
통제 지침	· 통제 품목별 리스트 통제 · 주로 공산 국가에 대한 통제 · 수입 증명서 · 최종 수하인 진술서	· 평화적 이용 보장 · IAEA 안전 조치 · 안전 조치를 받지 않는 재이전 금지	· IAEA 전면 안전 조치 · 물리적 방호 · 민감 품목의 이전 억제 · 농축·재처리에 대한 사전 동의 부과

IAEA 문서 INFCIRC/209로 발간되었다.

쟁거위원회는 회원국간의 수출 정보 교환에 합의하였는데, 특히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의 실제적인 수출 및 수출 허가 발급에 대한 정보를 매년 4월 비밀로 회원국들간에 회람되는 'Annual Returns' 시스템을 통하여 교환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쟁거위원회는 통제 품목을 <표 3>과 같이 추가하였다.

쟁거위원회 지침은 NPT 가입국이 아닌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수출 통제 품목을 평화적 목적으로 공급하려고 할 때 공급국 정부가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첫째, 공급되는 핵물질 또는 공급되는 품목에서 가공·사용·생산된 핵물질을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에 전용하지 않는 것이 공급 조건이라는 것을 수입국에게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수입국은 수령한 핵물질 또는 품목에서 가공·사용·생산된 핵물질에 대하여 IAEA 안전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셋째, 수출 통제 품목을 수출하려는 경우, 각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하여 수출 품목이 NPT 가입국이 아닌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IAEA 안전 조치 적용에 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표 6) 수출 통제 체제별 회원국 현황

체제	COCOM	NSG	Z C	MTCR	A G	NATO	OECD
미국	○	○	○	○	○	○	○
캐나다	○	○	○	○	○	○	○
영국	○	○	○	○	○	○	○
독일	○	○	○	○	○	○	○
프랑스	○	○	○	○	○	○	○
이탈리아	○	○	○	○	○	○	○
네덜란드	○	○	○	○	○	○	○
벨기에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아일랜드		○	○	○	○	○	○
스위스		○	○	○	○	○	○
스웨덴		○	○	○	○	○	○
노르웨이	○	○	○	○	○	○	○
핀란드		○	○	○	○	○	○
오스트리아		○	○	○	○	○	○
덴마크	○	○	○	○	○	○	○
아이슬란드				○	○	○	○
스페인	○	○	○	○	○	○	○
포르투갈	○	○	○	○	○	○	○
그리스	○	○	○	○	○	○	○
터키	○					○	○
일본	○	○	○	○	○		○
한국		○	○				
호주	○	○	○	○	○		○
오스트레일리아	○	○	○	○	○		○
뉴질랜드		○		○	○		○
아르헨티나		○	○	○	○		
러시아		○	○				
체코		○	○		○		
슬로바키아		○	○		○		
폴란드		○	○		○		
헝가리		○	○	○	○		
불가리아		○	○				
루마니아		○	○		○		
남아공화국		○	○				
회원국 수	17개국	32개국	31개국	25개국	29개국	21개국	24개국

주: 1. MTCR 지침 수락국: 중국·이스라엘·루마니아·남아공·러시아·우크라이나·브라질
 2. COCOM 협력국: 회원국 외 6개국

쟁거위원회의 수출 통제 품목은 원자력공급그룹(NSG)의 Part I과 동

일 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침과 부대 조항은 NSG가 보다 엄격하고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도 NSG가 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자력 수출입 통제는 NSG를 따르고 있다.

원자력 전용 품목 수출에 대하여 NSG는 물리적 방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출입 통제 규정인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반영되었다.

쟁거위원회는 통제 품목은 <표 4>에, 비확산 통제 기구 비교는 <표 5>에, 수출 통제 체제별 회원국 현황은 <표 6>에 나타내었다.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

1. 국내 제도의 시행 배경

우리 나라는 핵무기의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핵활동의 투명성을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 등 안전 조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한국은 COCOM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양해 각서 협약에 따라 비확산을 위한 COCOM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NSG·ZC 회원국들이 한국을 원자력 기술 공급국 또는 공급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하고 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의 비확산 정책에 따라 95년 10월에 NSG와 ZC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NSG 및 ZC의 회원국 가입에 앞서

서 92년 12월에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 안보 및 기타 국익을 위하여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전략물자수출입공고(통상산업부 고시 제1993-33호, 93. 7. 1)에 의하여 수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전략기술수출공고(과학기술처 공고 제1993-8호, 93. 7. 2)를 고시하여 전략 기술 수출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공고

대외무역법 제24조의 3 규정에는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입 통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표 7).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원자력

관련 물자를 포함한 COCOM 품목의 전략 물자 수출입 통제를 위하여 전략 물자수출입공고를 93년 7월 1일에 고시하였으며, 95년 10월 1일에는 COCOM을 비롯하여 NSG·ZC·MTCR·AG의 전략 물자를 수출입 통제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전략 물자 중 원자력 관련 품목의 수출입시 정부의 수출 허가와 관련된 행정 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 근거에 의하여 통상산업부가 과학기술처 및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공고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내용에는 제1장 총칙, 제2장 COCOM 기구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일반 산

(표 7)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수출입통제 관련 조항

<p>법 제24조의 3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 등)</p>	<p>① 통상산업부 장관은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 안보, 기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이하 전략 물자라 한다)을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승인을 얻기 전에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의 수출 허가를 받게 하거나 통상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수입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수입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 장관이 공고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 품목 및 구역 2. 전략 물자 수출이 제한되는 대상 지역 3.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 및 수입에 관한 절차 4. 기타 전략 물자 수출·수입의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시행령 제48조의 2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p>	<p>법 제2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 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략 물자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시행령 제48조의 4 (전략 물자 수출입 공고)</p>	<p>통상산업부 장관이 법 제2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 물자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이하 전략물자수출입공고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업용 물자·방산 물자·핵관련 물자의 통제, 제3장 NSG·ZC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원자력 전용 물자 및 원자력 관련 일반 산업용 물자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장에는 MTCR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미사일 및 기술의 통제, 제5장에는 AG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생화학 무기 관련 품목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통제 품목을 보면 <표 8>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중 총칙과 원자력 관련 품목이 관계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전략 물자 범위에는 통제 품목 목록의 시설과 장비 및 기술까지도 포함한다.

「전략 물자 수입 증명서」라 함은 수

입자가 전략 물자를 제3국으로 환송·환적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입자 정부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또 「최종 수하인」이라 함은 전략 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은 자나 구매하는 자를 말하며, 「최종 사용자」라 함은 전략 물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비확산 체제별 통제 국가 분류로는 COCOM의 경우 3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북한(‘가’지역)은 원칙적 금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통제 제도 운영 국가(‘나’지역)에 대하여는 전략 물자 수입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통제 제도 비운영 국가(‘다’지역)에 대하여는 최종 수하인 진술서와 수입 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원자력 사업자가 전략 물자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허가 사항과 관련된 수출 허가 기관은 <표 9>와 같다.

비확산 체제별 수출 허가 절차 및 검토 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COCOM 품목 중 핵관련 물자의 수출 허가 절차는 먼저 수출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서류 중 수출 허가 신청서(4부)·수출 신용장·수출 계약서·기술적 특성 명세서와, 수출 통제 제도 시행 국가(‘나’지역)로 수출할 경우는 수입 증명서를, 수출 통제 제도 미시행 국가(‘다’지역)로 수출할 경우는 최종 수하인 진술서를 구비하여 과학기술처에 제출한다.

과학기술처는 공고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전략 물자의 해당 여부, 수출 품목의 수입 국가, 기술 수준과 외교적 민감성, 민간 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최종 사용자의 신뢰성, 수출 제한 지역으로의 유통 가능성, 거래 부적격자 여부, 외교 안보상의 중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검토·협의한 후 15일 이내에 전략 물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둘째, NSG·ZC 품목 중 원자력 전용 물자의 수출 허가 절차는, 수출자의 구비 서류 중 회원국으로 수출 시 수출 허가 신청서(4부), 수출 허가 신청 내용 명세서와 핵원료 등 중요 물질의 경우 공인 기관이 발행하는 성

<표 8> 비확산 체제별 통제 품목 구분

COCOM 품목	· 일반 산업용 물자 : 신소재·전자·컴퓨터 등 8개 분야 · 방산 물자 : 소화기·무기 등 21개 분야 · 핵관련 물자 : 핵물질·중수 등 25개 분야
NSG·ZC 품목	· 원자력 전용 품목 : 핵물질·원자로·핵주기 시설 등 9개 분야 · 원자력 관련 일반 산업용 물자 : 산업용 장비·물질 등 8개 분야
MTCR 품목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기술·장비
AG 품목	화학 무기·생물 무기·병원균 등

<표 9> 수출 허가 기관

내 용	COCOM 품목	NSG·ZC 품목	MTCR 품목	AG 품목
수출허가기관	· 통상산업부 : 일반 산업용 물자 · 국방부 : 방산 물자 · 과학기술처 : 핵관련 물자	· 과학기술처 : 원자력 전용 품목 · 통상산업부 : 원자력 관련 일반 산업용 물자	· 통상산업부 (수입 목적이 군 사용일 경우는 국방부)	· 통상산업부 (최종)

주 : 전략 물자 중 기술만을 수출할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과학기술처 장관의 수출 승인

분표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회원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시에는 앞에서 말한 회원국으로 수출시의 서류 이외에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 존재 및 사용 목적 설계서, 수입자와 수출자의 서약서를 구비하여 과학기술처에 제출한다.

과학기술처는 외교 안보의 중대한 영향, 수출 허가 요건, 수출 통제 원칙, 수출 통제 지침 중 수입국 정부의 보증, 물리적 방호, 운반·포장 기준, IAEA 안전 조치, 재수출시 우리 정부의 동의, 세부 기술 이전 지침, 원자력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과 수출 허가 요건 중 NPT 가입국 여부, 중수·재처리 공정 여부, 농축·재처리 여부, 핵비확산 지지·이행 여부, 비밀·불법적 조달 여부와 수출 제한 지역 중 핵개발 우려국의 검토 등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 통상산업부와의 협의 및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검토를 거쳐 15일 이내에 수출 허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셋째, COCOM 품목 중 핵관련 물자에 대한 수입 허가의 경우, 수입 증명서는 수출국(수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국내 수입자가 정부에 대하여 수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하게 된다.

우선 수입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 중 전략 물자 수입 증명서, 전략 물자 수입 내역 신고서, 수입자와 최종 수하인의 매매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등을 과학기술처에 제출하면 과학기술처는

수입 증명서의 내용, 전략 물자 수입 내역서, 수출국의 수입 증명서 요구 사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10일 이내에 수입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넷째, 원자력 사업자가 원자력 관련 전략 물자의 수출입시 수출입 허가 신청에 앞서 전략 물자의 범위의 해당 여부 또는 통제 대상 범위의 해당 여부를 확인코자 할 때에는, 전략 물자 판정 신청서를 과학기술처에 제출을 하면 동 신청서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전략 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해 주고 있다.

이상 원자력 관련 전략 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다음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후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요할 때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 허가의 유효 기간은 1년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전략 물자 수입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훼손·분실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입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략 물자는 반드시 국내로 수입하여야 하고 외국으로 환송·환적 또는 재수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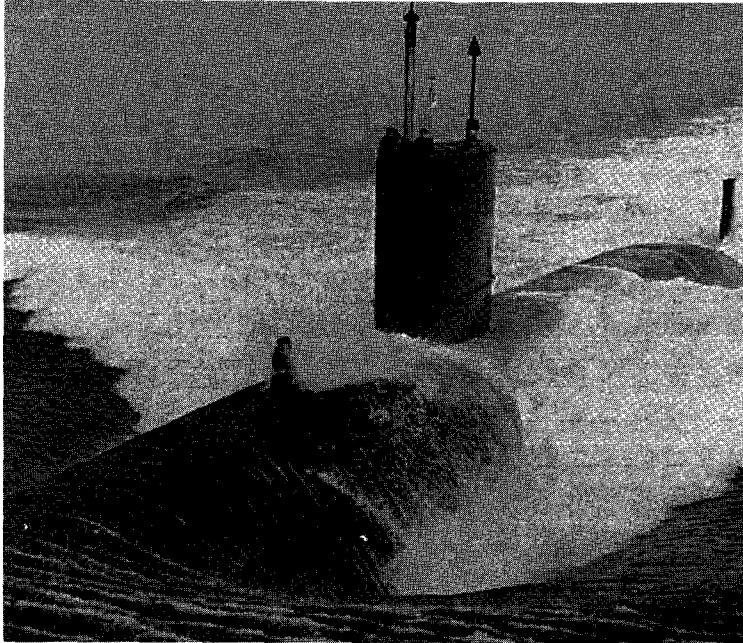
나. 전략기술수출공고

전략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 제도는 앞에서 말한 전략 물자의 수출입 허가 사항과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처 장관은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 기술에 대한 수출을 승인한다.

「전략 기술」이라 함은 기술개발촉

〈표 10〉 전략 기술 수출 승인 관련법 및 규정

<p>법 제10조의 3 (전략기술수출의 승인)</p>	<p>①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 수출 계약의 대상 기술이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저해하는 등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0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 장관이 기술 수출 계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 기술의 범위 및 수출 계약의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p>
<p>시행령 제24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p>	<p>① 법 제1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 기술 수출 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과학 기술처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전략기술수출공고 제2조, 제3조</p>	<p>○ 전략 기술이라 함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저해하는 등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전략 물자의 기술을 말한다.</p> <p>○ 전략 기술의 범위는 전략 물자의 개발·생산·사용에 관한 기술 자료·기술 용역·S/W 등 기술 정보를 말한다.</p>



핵접수합의 모습. 핵비확산체제의 이행은 회원국간의 정치적 약속을 각 국가가 실행하는 것이다.

진법 제10조의 3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저해하는 등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89년 12월에 동 조항을 신설하여, 전략 기술을 수출할 경우,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고시된 전략기술수출공고(과학기술처 고시 제1995-10호, 95. 8 개정)에 따라 전략 기술 수출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의 3 및 관련 규정에는 전략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 제도를 <표 10>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개발촉진법 제10조의 3의 근거에 의하여 고시된 전략 기술수출공고에서는, 전략기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외무역법의 근거에 의하여 고시된 전략물자수출입 공고에서 정해 놓은 전략물자에 대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정하고 있다.

전략기술 수출시 수출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수출승인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중 수출통제 원칙·지침 및 수출승인요건 등과 전략기술의 해당 여부 등은 전략물자에 대한 행정절차와 유사하므로, 앞에서 말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내용을 참고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략기술의 수출에 관하여

전략기술수출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준용하고 있다.

IAEA 전면보고제도

1. 전면보고제도의 개요

IAEA에서는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안전 조치 수단의 강화와 각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원자력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핵물질 및 특수 장비의 이동 사항을 파악하고자 핵물질 및 핵관련 장비의 수출입 현황을 보고토록 하는 IAEA 전면보고제도(Universal Reporting System)를 시행하고 있다.

IAEA 전면보고제도는 모든 국가가 가입토록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보고 제도에 의하여 모든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IAEA 전면보고제도 이행은 그 나라의 핵투명성 공개 및 핵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는 척도이자 국가의 의지이므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95년 10월에 NSG 및 ZC에 이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한 바 있으며 따라서 IAEA 전면보고제도에 동참할 의무와 명분이 더욱 높아졌다.

2. 전면보고제도 추진 경위

IAEA 전면보고제도에 대한 추진

〈표 11〉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제57조

제57조(수출입 보고) 별표 제9의 제1부 품목(원자력 전용 품목)을 수출입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수출입 실적을 다음 각호와 같이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핵물질의 경우 도착일 기준, 수출입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
2. 특수 장비 및 비핵물질의 경우 도착일 기준, 수출입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위를 살펴보면, 93년 2월 IAEA 이사회에서는 핵물질 및 핵관련 장비의 수출입 현황을 IAEA에 보고하는 전면보고제도를 승인하였다.

94년 11월 IAEA 사무국에서는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에 우리나라의 IAEA 전면보고제도 참여를 공식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에서는 과학기술처에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 및 가입 예상 시기를 문의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처는 통상산업부·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참여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면보고제도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95년 2월 과학기술처는 추진중인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대한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전면보고제도에 참여가 가능함을 외무부에 통보하였다.

95년 7월 IAEA 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면보고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참

여할 것을 독촉하였다.

같은 해 10월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개정시 동 보고 제도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95년 11월에 공식 가입하였다.

3. 근거 및 보고 절차

전면보고제도와 관련된 근거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고시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 제57조의 내용은 〈표 11〉과 같다.

전면보고제도의 보고 대상 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정한 NSG Part I 품목(원자력 전용 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IAEA는 정부로부터 핵물질의 경우 수출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비핵물질 및 특수 장비의 경우 수출입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자로부터 핵물질의 경우 15일, 비핵물질의 경우 3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보고 받아 이를 각각 30일 및 60일 이내에 각각 IAE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IAEA 전면보고제도는 각 국가에 대한 보고 의무를 국제법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원자력 사업자는 동 보고 제도의 성실한 이행을 위

해서 사업자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사업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고제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고의 이행이 원자력 비확산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국제 기구에 표명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전면보고제도를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IAEA에 대하여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보고 국가의 보고 내용과 다르므로 국제적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비확산 체제의 이행은 회원국간의 정치적 약속을 국가가 실행하는 것으로서, 회원국 전체에 공통되는 통제 수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재량에 따라 국내법으로 개별적인 통제를 행하고 있다.

원자력 사업자는 원자력 품목의 수출입 통제의 취지가 정부의 규제가 아닌 비확산 국제 질서의 동참이라는 국가의 의지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국제 신뢰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중심으로 살펴본 원자력 품목의 수출입에 대한 정부의 허가·승인 등 행정 사항들이 원자력 관계 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